

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8. 4. 12.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8. 4. 2.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18. 4. 4.

다. 상정일자 : 제219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(2018. 4. 12.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복지행정과장 김현기

가. 제안이유

조례의 상위법(“사회복지 사업법”)이 개정되어 기존 조례의 위임근거 해당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가 존속할 필요가 없게 되어 조례를 폐지하기 위함.

나. 주요내용

1) 상위법 개정 시 조례 위임근거 해당조항 삭제로 조례폐지 필요

- “사회복지 사업법” 제8조(복지위원) : 2017.10.24일 삭제

- “사회보장 급여법” 제44조(복지위원) : 2017.3.21일 삭제

2) 위 법령상 조항이 삭제된 "복지위원" 관련 내용이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 사회 보장협의 운영 조례”에 반영되어 있음

3. 검토보고 (이주현 전문위원)

- 2008년 제정된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”의 위임근거 상위법인 “사회복지 사업법” 제8조(복지위원)의 조항이 2017. 10. 24일 개정되면서 삭제되었고 “사회보장 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” 제44조(복지위원)의 조항이 2017. 3. 21일 개정되면서 삭제되었음.
- 아울러, “복지위원” 관련 조항이 상위법에서 삭제는 되었으나 그 기능에 필요한 내용이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운영 조례”에 반영되어 있음.
- 따라서,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“복지위원”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법령 체계상, 시책추진상 문제가 없고 타당하다고 판단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: 없음